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8가합52471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1. 주식회사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용

피 고 C

변론 종결 2020. 4. 9

판결 선고 2020. 5. 7

주 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20,000,000원, 피고 B에게 280,3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06. 4. 11.부터 2007. 11. 27.까지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5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약8,000원의 가격으로 매수하고 그 대가로 피고에게,원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원고 A'라 한다)는 120,000,000원,원고 B은 280,300,000등 합계400,3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08. 2.경 위 주식거래에 대한 매매계약을 작성하면서 계약서 상 매매대금을 50,000,000원으로 기재하려고 하였고,원고들은 이에동의하지 않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들로부터 수령한 주식대금을 원고들에게 반환할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같은 사실 및 사정, 즉 당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 5만 주를 매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그 무렵 원고들은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0,3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점, 피고가 2008. 2.경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주식매매대금이50,000,000원(1주당 1,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1주당 가격을 15,000원으로 한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점,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송금한 위 돈 중 일부는 이 사건 주식의 대금이 아니라다른 명목이라는 취지의 주장과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다시 되팔아 상당한 이익을남겼다는 취지의 주장 등을 하고 있으나

이를 증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400,300,000원은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1주당약 8,000원)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날짜	원고 A	날짜	원고 B
2006. 4. 21	10,000,000	2006. 4. 11.	10,000,000
2006. 5. 2.	5,000,000	2007. 4. 25.	10,000,000
2006. 5. 11.	15,000,000	2007. 5. 9.	20,000,000
2006. 5. 12.	10,000,000	2007. 7. 24.	10,000,000
2006. 5. 19.	5,000,000	2007. 8. 10.	20,000,000
2006. 6. 19.	75,000,000	2007. 8. 28.	5,000,000
		2007. 9. 11.	150,000,000
		2007. 11. 19	55,000,000
		2007. 11. 27.	300,000
합계	120,000,000	합계	280,300,000

또한 위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실제와 달리 50,000,000원으로 할 것을 요구하자 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소의 제기로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수령한 주식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20,000,000원, 원고 B에게 280,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임기환 판사 김희영 판사 김종범